조선 태종의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

남 지 대**

1. 머리말
2. 誥命과 왕위의 정당화
  1) 禪位를 받다
  2) 嗣位를 인정받다
  3) 誥命을 받다
3. 태조의 인정과 왕통의 정당화
  1) 神懿王后 추존과 세자 되기
  2) 태조와 관계 개선 노력
  3) 趙思義의 난과 진압
4. 다시 誥命을 받다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태종이 왕위와 왕통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靖安君 李芳遠은 1398년 8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태조를 물러나게 하여 정종을 즉위시켰으며, 정종의 세자가 되어 선위를 받아 1400년 11월에 즉위하였다. 이 때문에 태종의 왕위는 명분과 정통성,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1] 태종이 바람직한 왕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왕위를 명분에서 정당화해야 했다. 검토의 편의를 위해 이를 왕위와 왕통으로 나누어 왕위의

* 본 연구는 서원대학교 2012년도 연구년 국내연수 과제로 지원받았음.
**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崔承熙, 1991, 「太宗朝의 王權과 政治運營體制」, 『국사관논총』 30, 국사편찬위원회.

정당화에는 明帝의 誥命이, 왕통의 정당화에는 조선왕조의 시조이자 부왕인 태조의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태종의 집권과정과 정치세력, 왕권과 국정운영체제, 왕권의 정치적 기반 등은 폭넓게 연구되었다.[2] 특히 崔承熙 선생은 태종이 왕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왕권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왕권강화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로소 태종의 왕권과 국정운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연구성과가 풍부함에도 태종이 왕위·왕통을 정당화하려 한 것 자체는 검토되지 않았다. 아마도 태종의 즉위가 도덕성·정통성에서 명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검토하여도 그 결과가 부정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태종의 즉위가 도덕성·정통성에서 명분에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태종이 성리학의 명분을 의식하였다는 점을 중시하며 태종이 왕위·왕통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검토하려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성리학의 가치를 실현하려 한 조선의 왕정에서 왕권과 성리학 가치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조선의 왕권이 지니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왕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면서 왕통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왕통을 구체적인 왕위와 분리할 수는 없으나, 검토의 편의를 위해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 먼저, 왕위에 대하여 禪位를 받아 즉위하고, 명에서 嗣位를 인정받고 誥命을 받은 것을 검토한다. 태종의 즉위 명분과 명으로부터 사위를 용인받아 종묘에 고하고, 고명을 받은 경과를 검토하여 왕위의 정당화로 정리할 것이다. 이어 왕통에 대하여 정종이 모후 神懿王后를 추숭한 것과 (태종이) 세자에 책봉되어 왕통에 들어선 것, 태종이 효성을 다하며 태조와 관계 개

2) 태종 초반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로는 李喜寬, 1988, 「朝鮮初 太宗의 執權과 그 政權의 性格」, 『역사학보』 120, 역사학회 ; 崔承熙, 1991, 「太宗朝의 王權과 政治運營體制」, 『국사관논총』 30, 국사편찬위원회. ; 安俊姬, 1993, 「朝鮮 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 『外大史學』 5 ; 崔承熙, 1995, 「개국초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체제」,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 韓忠熙, 2001, 「朝鮮 太宗王權의 政治的 基盤 硏究」, 『大丘史學』 63, 大丘史學會. ; 류주희, 2004, 「태종의 집권과정과 정치세력의 추이」, 『中央史學』 20, 韓國中央史學會. 등이 있다.

선에 노력한 것, 조사의의 난이 진압되자 태조가 어쩔 수 없이 태종을 인정하게 된 것을 검토하여 왕통의 정당화로 정리할 것이다. 태종의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에 대한 검토는 여기서 끝낼 수 있으나, 명의 사정으로 인하여 태종이 고명을 두 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고명을 받은 것까지 검토하려 한다.

조선의 왕은 한 나라의 왕이자 사대관계에서 명의 제후였다.[3] 천자의 고명을 받는 제후의 왕위는 천자에 대한 충을 담보로 인정 보장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통은 왕위를 물려받아 선왕을 종묘에 모시고 효를 다함으로써 그 권위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태종은 고명을 두 번 받았고, 즉위 후에도 시조이자 부왕인 태조가 살아있었던 점에서 특수한 예이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내세운 조선에서 바람직한 왕은, 천자에 대한 충성과 선왕에 대한 효도를 바탕으로 백성에게 인정[惠政]을 베푸는 어진 군주이다. 어진 군주가 되는 자질로는 好學, 納諫, 勤政 등을 든다. 성리학의 이념을 체득하여 公論에 따라 신료의 여론을 존중하며, 公道를 지향하여 惠民을 위해 勤政하는 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유교 왕정을 정당화하는 孝忠仁의 삼각구조라 하겠다. 여기서는 태종이 정치에 부지런하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왕정의 실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으며, 정국의 변화도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와 관련되는 사항만을 다룰 것이다.

2. 誥命과 왕위의 정당화

1) 禪位를 받다

태종은 정종의 세자로서 선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정종은 1400년 11월 11일 선위교지를 내렸다.[4] 權近이 지은 禪位敎旨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세자가 개국에 공이 많아 물망이 모였는데도 權奸이 幼孼을 세워 종묘사직이 기울었으나, 세자가 계책을 정하여 종사를 안정시켰으니 조선의 再造도 세자에 힘입었다. 그

3) 정동훈, 2012, 「명대의 예제 질서에서 조선국왕의 위상」, 『역사와 현실』 84, 한국역사연구회.
4)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1월 신미 "上禪位于王世子"

때 세자가 정종이 嫡長이라 하며 굳이 양보하여 즉위한 지 3년에 天意 人心에 미쁘지 못하매, 智德 仁義 孝悌를 갖춘 세자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것이다. 곧, 덕 있는 至親으로 왕통을 잇게 한다는 것이었다. 세자[태종]는 다음날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聽政을 청하기를 기다려,[5] 13일에 즉위하여 백관의 朝賀를 받고 宥旨를 반포하였다.[6] 유지에서, 태종은 먼저 태조가 天命을 받아 개국하고 정종이 적장으로 이어받았음과 자신이 세자로서 監軍撫國하였음을 밝히고, 끝에서 왕의 덕으로 백성에게 은혜로움을 앞세우며 하늘과 인민의 사이에서 우러르고 굽어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敬과 仁으로 畏天勤民할 것을 밝혔다. 그날 명나라에 정종은 傳位를, 태종은 襲位를 각각 奏聞하였다.[7]

선위의 명분은 종사에 대한 공과 덕을 바탕으로 한 擇賢이었다. 곧, 태종이 仁義 孝悌한 천성에 학문으로 智德을 갖추어 睿哲 謙恭하다는 것과 濟世 安民의 도량으로 난을 바로잡은 공을 이루었으니 마땅히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 왕통을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받아서 태종은 재삼 사양하였으나 어쩔 수 없어 즉위하는데, 敬과 仁으로써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부지런하여 惠民하겠다고 하였다. '畏天勤民'은 12월 壽昌宮 화재로 내린 求言敎書에서 다시 강조되었다.[8] 성리학에 근거한 유교 왕정의 원론을 거듭 내세웠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의 왕은, 법궁의 正殿을 勤政殿이라 하였듯이, 그 왕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

5)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1월 임신 "議政府率百官請世子聽政"

6)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1월 계유 "世子詣闕 具朝服受命. 御輦至壽昌宮卽位, 受百官朝賀, 頒宥旨. 王若曰 惟我啓運神武太上王 承祖宗之積德 得天人之協贊, 膺受景命 奄有東方. 盛德神功 宏規遠略 以衍我朝鮮億萬世無疆之祚, 而我上王 以嫡以長 祗承嚴命 傳卽寶位, 勵精致治 于玆三年. 頃者 以無嫡嗣 宜預建儲, 乃謂小子 母弟之親 且於開國定社之際 與有微效 册爲世子, 付以監撫之任, 尙懼不堪 每懷兢惕, 何圖今月十一日 忽降敎旨 乃命以位? 讓至再三 成命莫回, 已於十三日癸酉 卽位於壽昌宮. 顧惟眇末 膺受大任 慄慄危懼 若涉淵氷. 尙賴宗親宰輔大小臣僚 各虔爾心 勉輔台德 以匡不逮. 屬玆膺命之初 宜布寬恩之典 可宥竟內, 自建文二年十一月十三日昧爽以前 除常赦所不原外, 已發覺未發覺 已結正未結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於戲! 天地之德 莫大於生物, 王者之德 莫大於惠民. 位天人之兩間 欲俯仰之無怍. 曰敬曰仁 畏天勤民 勉循玆道 以克負荷. 惟爾臣民 體予至懷."

7) 위와 같음.

8)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2월 임자 "壽昌宮災" ○"下敎求言. 王若曰 (중략) 尙其協心交儆 勉修厥職 補予不逮 以副予畏天勤民之意."

惠民을 위한 勤政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태종의 왕위는 세자로서 택현의 명분으로 선위를 받아 즉위한 것이기에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종의 선위나 태종의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도 드러나지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없고 반대 세력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태종의 왕위는 명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태조는 그 선위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도 않았다. 태조가 개성을 떠나 자리를 피한 데서 방증된다. 선위 직전에 정종이 태조를 찾아뵈었고,[9] 태조는 바로 新都의 貞陵를 거쳐 오대산으로 갔다가 태종이 즉위한 뒤에 돌아왔다.[10] 선위를 보고받고 태조는, 이미 선위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하였다.[11] 태조는 사실만을 받아들였을 뿐, 그 사실을 부왕이나 시조로서 인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서 태종은 명분을 더욱 의식하는 왕이 되었을 것이다. 정종이 세자에게 선위하면서 새삼스레 택현을 강조한 것이나, 태종이 즉위하며 천인의 사이에서 우러르고 굽어봄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에게 부지런히 하겠다고 다짐한 데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 태종은 명분을 분명하게 의식하였고, 그 명분은 성리학의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성리학의 명분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른 태도로 실현하려는 것이 조선의 왕정이라면, 태종의 즉위는 그러한 왕정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은 명분을 의식하며 바람직한 왕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조선에서 바람직한 왕은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 선왕에게 효도하고 사대관계에서 제후로서 충성하며 인민에게 혜정을 베푸는 현군이다. 태종은 부왕 태조에게 孝順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였고 명에 지성으로 사대하였으며,[12] 왕으로서 好學과 納諫

9)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0월 병오 "上自海州還宮 卽詣太上殿"

10) 위와 같음. 10월 병오 "太上王幸新都 上欲祗送于郊 追至于古東大門 不及而還. 太上王以夜四鼓動駕, 世子追及於碧蹄驛." ○을묘 "太上王至貞陵 設精勤法席. 太上王脫衣施佛, 將幸臺山洛山, 國人不知乘輿所指." ○정사 "遣法王都僧統雪悟於新都 請太上還. 雪悟不得請, 侍詣臺山." 〈11월 신미 禪位〉 11월 계유 "太上王至自臺山, 上率各司一員 幸長湍麻川以迎."

11) 주 4)와 같음. "遣左承旨李原告太上王以禪位之意 太上王曰 爲之不得 不爲亦不得 今已禪位 復何言哉"

12) 태조에게 효순한 것은 3장에서 다룰 것이다. 태종이 지성으로 사대한 것은 아래 주) 26)

을 드러내며 勤政하려 하였다.

태종은 즉위 초부터 유학을 숭상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위하여 바로 환관들이 궁중에서 모시던 仁王佛을 內願堂으로 옮기게 하고,[13] 12월에 국가의 불교행사를 없애도록 하였다.[14] 1401년(태종 원) 2월 佐命功臣의 연회에 앞서 文廟를 배알하였다.[15] 윤 3월에는 넓혀 지은 正殿을 無逸殿이라 이름지었다.[16]

태종은 災異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天命의 군주다운 태도를 드러내려 하였다.[17] 즉위년 12월에 경연에서, 태종은 재이에 대하여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바르면 천기가 위에서 순하며 불순하면 천기 또한 따라서 불순이 있는 것이라 하고, 淫祀를 없앨 것에 대하여 물었다.[18] 태종은 壽昌宮 火災를 계기삼아 8사로 자책하며 자신의 허물, 좌우의 忠邪, 政令의 잘잘못, 민생의 利病과 폐해를 구제할 방법 등을 찾는 求言敎書를 내렸다.[19] 태종은 구언교서의 첫머리에서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간여하여 틈 없이 서로 통달하는데 아래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위에서 꾸짖음을 보인다."며 궁궐의 失火를 하늘이 왕에게 내린 꾸짖음으로 받아들여 거꾸로 천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었다.

태종은 好學을 드러내려 하였다. 태종은 즉위한 다음 달에 바로 경연에 나아가 大學衍義를 읽고, 경연에 諫官이 들어와 허물이 있으면 바로 말하도록 하였다.[20] 그 뒤 태종이 경연을 연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틈나는 대로 侍讀 金科와 경사를 읽었다.[21] 태종이 호학을 의식하며 드러내려 한 것은 1401년 윤 3

을 참고.

13)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1월 계유 "移置仁王佛於內願堂"

14)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2월 임자 "罷佛事"

15)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2월 신축 "上遂至成均館 謁文廟"

16)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윤3월 경자 "宴功臣于淸和亭. 初 上以正殿狹隘 改構而廣之, 起亭于宮之北, 命河崙權近名之 乃書淸和 樂山 無逸以進, 上以無逸名殿, 淸和名亭."

17) 남지대, 2003, 「재이와 태종의 왕권」, 『인문과학연구』 13,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8)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2월 무신 "御經筵, (중략) 上曰 予聞人事正於下 則天氣順於上, 人事有不順 則天氣亦從而有不順者矣. 上又問曰 昭格殿醮星之事 靈異屢著 不可忽也, 其餘淫祀 去之如何."

19) 위와 같음. "下敎求言. 王若曰 蓋聞天人相與 通達無間, 政失於下 譴見於上. 災異之興 實由人作 天之譴告 可不懼哉. 予以否德 纘承丕緖 夙夜軫念 期至于治, 四方之廣 萬務之煩, 豈能周知而無過. (후략)"

20)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2월 신묘 "御經筵"

월 종묘에 즉위를 고하러 한양으로 가는 幕次에서 대학연의를 읽은 데서도 살필 수 있다.[22]

태종은 간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納諫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위년 12월에 대간이 종묘 제례를 위한 傳香 때 冕服을 입어야 한다고 간하자, 태종은 실례를 인정하고 그 말을 따랐다.[23] 3월에 문하부 낭사가 상소하여 사냥을 그칠 것과 함께 몇 가지를 논하자, 태종은 간언을 깊이 받아들였다.[24]

태종은 스스로 제후로서 분수를 지키려 하였다. 1401년(태종 원) 정월에 중국에 僭擬하여 아니 된다며 公侯伯의 작호를 없앴다.[25] 2월 말에는 明의 사신이 돌아가며 태종에게 지성으로 事大하니 아뢰면 반드시 誥命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였다.[26]

한편으로 태종은 공신을 책봉하고, 대간을 견제하였으며 역사의 기록을 의식하여 사관이 들어오는 곳을 제한하였다. 태종은 1401년 정월에 佐命功臣을 4등으로 녹훈하고,[27] 2월에는 좌명공신과 동맹하고 연회를 연 뒤 盟書를 베껴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28] 즉위를 도운 공신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묶고 배반하지 않도록 다짐한 것이다. 태종은 대간언론을 억압하고 제한하려 하였으며 대간이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에 저촉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강경하게 대처하였다.[29] 태종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관을 正殿에만 들어오도록 제한하였다.[30]

---

21)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경오 "門下府郎舍請御經筵 與大臣講論"

22)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윤3월 을묘 "幸新都 駕次廣灘 (중략) 上在幕次 與金科讀大學衍義二卷"

23) 『정종실록』 권6, 정종 2년 12월 기유 "臺諫請傳香當御冕服 上允"

24)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임오 "門下府郎舍上疏 請停田獵 止游宴 日覲太上殿 御經筵, 深納之. (후략)"

25)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정월 을유 "革公侯伯之號 以不可僭擬中國故也"

26)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2월 기미 "使臣陸顒(중략) 顒臨別 謂王至誠事大 吾將奏聞 必賜誥命矣"

27)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정월 을해 "錄佐命功爲四等"

28)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2월 신축 "上如馬巖壇下 與佐命功臣 歃血同盟, 宴功臣"

29) 남지대, 2013, 「태종 초 태종과 대간 언론의 갈등」, 『역사문화연구』 4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 嗣位를 인정받다

조선의 보고를 받은 명에서는 태종의 嗣位를 그냥 받아들였다. 1401년(태종 원) 윤 3월에 사신이 돌아오면서 태종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을 용인하는 내용의 咨文을 가져 왔다.[31] 명 惠帝는 천리와 인륜에 어그러짐이 없다면, 그 나라 안에서 스스로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로써 태종은 황제가 (소극적이기는 하나) 왕위를 용인한 왕이 되었다.

태종은 명분에 문제 있음을 의식하여 명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종묘에 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명에서 사위를 용인하자, 태종은 4월 1일 신도의 종묘에 즉위를 고하고 仁昭殿과 貞陵에 친히 제사하였다.[32] 돌아올 때는 융성한 환영과 함께 백관의 진하를 받았고,[33] 이어 경내의 죄를 용서하였다.[34] 태종은 宥旨에서 태상왕과 상왕을 이어 즉위한 뒤 명에 사신을 보내 천자께 고하여 허락을 얻었음을 밝히고, 임금이 즉위하여 반드시 위로 천자에 고하고 아래로 종묘에 고하는 것은 받았음으로 보이려는 것이라고 한 뒤에, 천자의 허락을 받아 친히 종묘에 고하여 예를 다한 뒤에 관대한 은혜를 넉넉하게 베푼다고 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즉위를 종묘에 고하려 갈 때에도 태조는 자리를 피했다. 태조는 윤 3월 초하루에 신도 한양으로 가서 금강산으로 갔다가,[35] 4월 말에 安邊에

---

30)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임오, ○4월 계미 "視事于報平殿. 史官洪汝剛入階下 宦官扶出之. 命都承旨朴錫命曰 若無逸殿則史官宜入左右 此乃予之燕所 承旨等皆兼史職 史官不必入也." ○정해.

31)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윤3월 갑진 "參判義興三軍府事朴子安 簽書義興三軍府事李詹等齎禮部咨文 回自京師. 咨曰 (중략) 本部官於奉天門奏奉聖旨 朝鮮本禮文之國 辭位襲職之事 前已勅爾禮部移文 報他知道. 今其使臣到 恁禮部家再回文書去他. 若果無虧天理悖人倫的事 任他國中自主張."

32)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기미 "朔 躬禘太室. 是日 親祭于仁昭殿及貞陵."

33)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임술 "上還宮 留司群臣設噱棚結綵儺禮百戲 以公服迎于崇仁門外, 成均館生徒教坊倡妓等獻歌謠, 百官進箋陳賀."

34)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갑자 "宥境內. 王若曰 恭惟我祖宗 積德累仁 以凝景命, 太上王 神功盛烈 肇建大業, 上王篤于孝友 克施有政. 以予否德 恭承遜位之命 牢辭不獲 已嘗遣使告于天子 欽蒙聖訓許以主張. 顧惟寡昧 膺此重艱 夙夜寅畏 罔知攸濟. 自古人君 有國之初 上必告天子 下必告宗廟 示有所受之也. (중략) 於戲! 尊祖敬宗 旣謹明禋之禮 赦過宥罪 優施寬大之恩."

서 서울로 돌아왔다.[36] 안변은 이듬해 11월 부사 趙思義가 난을 일으킬 때 군사를 일으킨 곳이다. 이러한 태조를 의식하여, 태종은 고묘한 뒤에 神懿王后의 仁昭殿 뿐만 아니라 神德王后의 貞陵에도 친히 제사를 모셨을 것이다.

이렇게 명제가 사위를 인정한 것을 종묘에 친히 고함으로써, 태종은 왕위와 왕통의 일차적인 정당화를 이룩하였다고 하겠다. 이후 태종은 적극적으로 정치를 펴나갔으며, 가뭄에 대처하여 반성하고 덕을 닦으며 널리 비를 빌었다. 無逸殿에서 친히 복시를 보여 을과 3인을 서용하였고,[37] 皇明禮制에 따라 음사를 줄였으며,[38] 구언에 응한 權近의 상소를 수용하여 6衙日에 일을 아뢰는 절차를 정하였다.[39] 구언에 따른 신료들의 陳言에 점수를 매겨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40] 諫官의 上言에 따라 史官을 들어오도록 하였고,[41] 금주령을 내려도 술마시는 사람이 술을 그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술을 끊지 않아서라며 술을 끊었다.[42] 이해 4월은 가물었다. 태종은 가뭄을 크게 걱정하여 雩祀 圓壇 社稷에 비를 빌었고, 또 女巫를 모아 빌었다.[43] 비는 5월 초에야 왔다.[44]

3) 誥命을 받다

명의 제후이기도 한 조선의 왕으로서 왕위의 정당화를 완결한다고 볼 수 있는

---

35)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윤3월 경인 "朔 太上王幸新都 上送至臨津" ○경자 "太上王自新都 遂幸金剛山"

36)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병술 "太上王至自安邊"

37)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정묘 "御無逸殿 覆試. (중략) 擢用及第乙科三人 載在六典, 然擧行自此年始."

38)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신미 "減淫祀. 上曰 巫覡淫祀煩瀆 自今春秋兩節 一依皇明禮制行之"

39)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임신 "儀禮詳定司上六衙日啓事儀. 承上旨也."

40)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무자 "下陳言于議政府 擬議以聞. 上擇可行者下一點 其下二點者 皆下政府擬議."

41)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갑술 "門下府郎舍上言 史官宜侍左右 允之"

42)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4월 임오 "命侍讀金科 講雲漢篇, 閔久旱也. 上止酒, 乃曰 雖下禁酒之令 飮酒者不止, 是寡人不斷酒之使然. 國人聞之 無敢會飮."

43) 위와 같음. "是月 旱. 上軫念 遣使禱雨于雩祀圓壇社稷 又聚女巫以禱."

44)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5월 갑오 "雨. 議政府以得雨 請進酒, 許之." ○병신 "大雨"

고명도 바로 내려졌다. 아마 정종에게 고명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었고, 惠帝가 내전에서 불리함도 작용하였을 것 같다.

혜제는 정종에게 고명을 내린 바 있었다. 1401년 3월 초 명에 갔던 사신이 혜제가 정종에게 내린 고명과 인신에 대한 勅旨에 근거한 예부의 咨文을 가지고 돌아왔다.[45] 1월에 내린 칙지의 대강은, 정종이 아우[이방원]를 후계로 정하려 하며 고명과 인신을 청하여 고명과 인신을 하사하였는데, 사신이 떠난 지 열흘이 못되어 정종이 이미 11월에 아우에게 국사를 넘겼다는 보고가 와서 이상하게 여겨, 왕위에 설 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고명과 인신을 줄 수 없고, 이미 보낸 고명과 인신도 그 사신이 돌아온 뒤에 다시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태종의 고명은 쉽게 바로 내려졌다. 5월 말 謝恩使 書狀官이 돌아와 명에서 고명과 인장을 가지고 오는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음을 알렸다.[46] 이에 태종은 자신의 꿈속에서 母后가 미리 알고 기뻐한 것이라 하였고, 백관과 한량기로는 모두 진하하였다. 태종이 고명 받음을 알게 된 자리에서 굳이 모후의 꿈을 말한 것은, 모후가 바로 정종을 嫡長으로 만드는 근거이며 아울러 태종이 적통이라는 정통성의 뿌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명의 사신은 6월 12일 無逸殿에서 태종에게 고명을 선포하였다.[47] 고명의 내용은 먼저 천자로서 명분을 내세운 뒤, 태종이 부형의 전위를 이어받아 그 땅을 鎭守하여 편안하게 하고, 와서 職貢을 다하여 예를 따르기를 정성스럽게 하며,

45)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을축 "判三司事禹仁烈 簽書義興三軍府事李文和等 齎禮部咨文 回自京師"

46)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5월 을묘 "謝恩使書狀官校書少監安允時通事判殿中寺事李玄 回自京師, 各賜鞍馬. 允時等啓曰 帝遣通政寺丞章謹文淵閣待詔端木禮 齎誥命印章 與謝恩使偕來 已渡鴨綠江. 上聞之 謂大臣曰 夜夢母后衣白衫, 謂予曰 予已移來. 色若欣欣然, 覺而異之 不勝感慕, 今日乃聞盛事將至 豈非母后在天之靈 前知而喜歟. 百官及大小閑良耆老等皆進賀."

47)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6월 기사 "帝遣通政寺丞章謹文淵閣待詔端木禮 來錫王命. (중략) 奉天承運皇帝誥曰 (중략) 朕承大統 師古成憲. 咨爾朝鮮權知國事李諱 襲父兄之傳 鎭綏玆土 來効職貢 率禮克誠, 以未受封 祈請勤至. 玆庸命爾爲朝鮮國王 錫以金印 長玆東土. 嗚呼 天無常心 惟民是從, 民無常戴 惟德是懷. 爾其懋德 以承眷佑, 孝友于家 忠順于上 仁惠于下 俾黎民受福, 後昆昭式 永輔于中國. 啓土建家 匪德莫宜 可不敬哉. 上受命訖, 服衰冕行謝恩禮."

봉함을 받지 못하여 빌고 청하기를 부지런히 지극하게 하므로, 조선국왕을 삼고 金印을 주어 동쪽 땅의 군장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으며, 끝에서 효와 충을 바탕으로 惠政을 베풀기를 당부하였다. 그날 李稷 등이 고명을 내린 경과를 담은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왔다.[48] 태종은 고명을 받은 것을 국가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경내의 죄를 용서하였다.[49]

태종이 받은 고명은 조선의 왕으로서는 처음이었다. 쿠데타로 즉위한 태종은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다. 왕위를 정당화하는 데는 무엇보다 황제의 고명이 중요하였다. 이는 태조의 청에 따라 (명의 사신이 고명을 선포하기도 전인) 6월 초에 방간을 소환하라고 의정부에 내린 전지에서 "이제 황제께서 고명과 인신을 주시어 임금과 신하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으니, 무엇을 혐의하겠는가?"[50] 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태종의 고명은 그냥 온 것은 아니었다. 명은 조선에서 軍馬 1만필을 사가겠다고 통지하고, 사신을 보내 易換馬의 이름으로 말을 징발하였다. 2월에 명으로 돌아간 사신이 조선에서 비단으로 양마를 사오면 군사에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51] 9월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좋은 말 1만 필을 바꾸게 하였으니, 시가에 따라 바꾸어 오되 저들에게 결손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는 병부의 咨文으로,[52] 10월 초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7차로 말 7천 필을 요동으로 보냈다.[53] 2운마를 보내던 때에 태종은 겨우 5천 필을 채울 수 있다는

48) 위와 같음. (誥命 결정은 4월 16일). ○기묘 (연회와 포상)

49)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6월 을해 "宥境內. 王若曰 惟我國家 世事中夏 受其爵命 保有民社 以克永世. 我太上王肇有國家 卽告于上國, 太祖高皇帝嘉其効順 許立爲王 以更國號. 上王繼位 恪勤職貢. 予以不穀膺此景緒 實賴祖宗積德之慶. 屬玆國家之再初 宜與臣民而更始 布告中外咸使知之. (중략) 於戲 畏天保國 常懷昭事之心, 發政施仁 共享時雍之治."

50)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6월 신유 "命召還芳幹, 議政府率百官諫止之. 傳旨政府曰 懷安君庚辰之事 非其本心 但惑於朴苞耳. 今皇帝賜誥印 君臣之分已定, 何足嫌乎. 其遣人召還."

51)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8월 기묘 "上遣醫 問使臣陸顒疾于中路"

52)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9월 정해 "朔 兵部咨曰 (중략) 欽奉聖旨 朝鮮國多產馬匹 前日國王好意思 進馬三千匹 已命遼東都司 給與官軍騎坐了. 如今再用些堪戰的馬 差人運著段匹布綿藥材 (중략) 易換好馬一萬匹. 恁兵部行文書 (중략) 照依那裏時價 易換將來, 不要虧著他.(후략)"

53) 南都泳, 위의 책, 248면.

뜻을 명에 보고하였다.[54] 1402년 3월 병부의 자문에 7천 필을 이미 바꾸었으니 1만 필을 채울 수 없다면 억지로 바꿀 것은 아니라 하여,[55] 4월 초에 마필 바꾸기를 파하였다.[56]

태종은 고명을 받아 국가를 다시 시작하는 뜻에서, 6월 사은사 편에 예부에 중국과 비슷한 것을 고치겠다고 문의하였고,[57] 7월에 河崙 등이 올린 것을 친히 검토하여 관제를 고쳤다.[58] 주된 내용은 門下府를 없애 그 관직을 議政府 관직으로 바꾸고 문하부낭사를 司諫院으로 독립시켰고, 三司를 司平府로, 義興三軍府를 承樞府로, 承宣房을 代言司로 고친 것 등이다. 고려말 재상중심의 체제를 왕중심의 체제로 바꾸려 하던, 태종에게 誥命은 관제를 새 틀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송 태조의 고사에 따라 登聞鼓[申聞鼓]를 두었고,[59] 왕이 거둥할 때에 재신이하 각사가 輦 앞에 모여서 배례하는 것을 없앴다.[60] 여기에서 고명을 받은 것을 계기삼아 간관을 우대하고 민의 원억을 들으려는 태종의 의욕과 의례상으로 관료들을 너그럽게 대하려는 태종의 여유를 볼 수 있다. 역환마를 보내는 중에, 태종은 1402년 2월말 명 사신이 가져온 親王 9章의 冕服을 받았다.[61] 이로써 조선의 태종은 명 황실의 친왕으로 예우 받게 되

54)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0월 신미 "監生劉敬 押二運馬一千匹還"

55)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3월 정미 "上至自逍遙山. 朝廷兵部咨文到. 其咨文曰 本部欽奉聖旨, 易換馬七千匹 今已易來. 朝鮮不能充一萬匹 則不可强易, 使臣可回來. 上喜."

56)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3월 기유 "議政府承樞府司平府會議易換馬事" ○4월 병진 "罷易換馬匹"

57)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6월 병자 "遣判門下府事趙浚右軍同知摠制安瑗如京師 謝恩也 (중략). 就咨禮部曰 (중략) 今來本職受命之初 理宜更改 爲此合行移咨 伏請照驗 聞奏施行."

58) 韓忠熙, 2011, 『朝鮮前期의 議政府와 政治』, 계명대학교출판부. 60-62면.

59)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7월 을사 "初置登聞鼓" ○8월 정사 "朔 命無告之民銜冤抑者進擊登聞鼓 (중략) 改登聞鼓爲申聞鼓" 태종이 신문고를 설치한 근본 목적은 반왕세력의 색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崔承熙, 2002, 『朝鮮初期 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68-69면.].

60)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7월 무신 "命除動駕時各司輦前拜禮"

61)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2월 기묘 "帝遣鴻臚寺行人潘文奎來錫王冕服 (중략) 其勅書曰 勅朝鮮國王李諱. (중략) 且朝鮮本郡王爵 宜賜以五章或七章服. (중략) 玆特命賜以親王九章之服, 遣使者往諭朕意. 嗚呼 朕之於王 顯寵表飾 無異吾骨肉, 所以示親愛也."

었다.

태종은 명의 내전을 살피며 적극 대처하였다. 1402년 3월 燕王[뒤의 成祖]의 군사가 이기고 惠帝의 군사가 싸우면 진다는 것과 타타르가 틈을 타 침략하여 시끄럽다는 보고를 받았다.[62] 4월에 태종은 매일 군사를 의논하였고,[63] 밀기에 실리지 않은 寺社田을 없애 軍資田에 속하게 하였으며,[64] 6월에는 삼군에 도총제이하 관원을 두었다.[65] 8월초 사은사가 길이 막혀 돌아오자, 경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군적에 올리도록 정하였고,[66] 이튿날에는 호패를 시행하도록 하였다.[67] 9월초에는 續字 丁田을 모두 군자에 속하도록 명하였다.[68] 9월말에, 내전에서 연왕이 이겨 6월에 황제에 즉위하였고, 명 사신이 압록강을 건넜음을 보고받고,[69] 10월초 좌정승 河崙을 賀登極使로 보내도록 하였다.[70]

위와 같이 태종은 그 원년 6월에 명제의 고명을 받았다. 조선왕조에서 처음으로 받은 것이었다. 고명을 받음으로써 제후로서 태종의 왕위는 정당화되었다. 이듬해 2월에는 친왕의 9장 면복을 받아 명의 친왕으로 예우 받아 사대관계에서 왕위는 더욱 안정되었다. 이어 태종은 (1402년) 4월에 맏아들 禔를 元子로 봉하여,[71] 왕통상의 위상도 강화하였다.

고명을 받은 뒤에 태종은 천명의 군주로서 재이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성껏 대처하였다.[72] 1401년 10월에 한성부가 종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난다

62)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3월 기축 "賀聖節使參贊議政府事崔有慶 回自京師"

63)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4월 신미 (전략) "上日議武事"

64)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4월 갑술 "革密記付外寺社田 屬軍資"

65)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계해 "置三軍都摠制以下官"

66)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8월 임자 "朔 謝恩使朴惇之以路梗 不得朝京而還, 傳寫皇帝詔書而來." ○"定軍丁成籍之法."

6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8월 계축 "議政府請人給號牌 因成戶口 允之"

68)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병술 "命戶曹以續字丁田 皆屬軍資"

6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9월 무신 "通事康邦祐來自遼東 至平壤. (중략) 是月十七日 燕王卽皇帝位. (후략)"

7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0월 갑인 "以金士衡爲領司平府事 河崙左政丞 (중략) 至是 以崙爲左政丞 賀登極也"

71)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4월 경오 "封禔爲元子" ○경진 "置元子府 號敬承"

72) 재이와 왕권의 전반적인 것은 남지대, 2003, 앞의 논문을 참고.

고 보고하자 내시를 보내어 확인하고, 의정부로 하여금 민폐를 자세히 살펴 보고하도록 하였다.[73] 1402년 7월 초 가뭄으로 구언하여 문무신료에게 시정의 폐를 말하게 하고, 경외 2죄이하의 죄수를 풀어주고, 시장을 옮기고, 무녀 장님 승도를 모아 비를 빌었다.[74] 이때 태종은 한 사람도 가뭄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신료들을 꾸짖으며, 가뭄을 가슴깊이 걱정하였다. 태종은 금주령을 내렸고,[75] 의정부의 상소에 따라 근무성적을 살펴 인사하는 법을 세웠다.[76] 7월 4일 의정부와 각사에서 시무를 상서하자,[77] 태종은 이를 친히 보고 侍讀 金科를 불러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부덕한 자기가 왕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 하며 흐느껴 울었다.[78] 이것은 태종이 덕 없음으로 자책하며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언급한 첫 사례이다. 여기에서 태종이 명제로부터 고명과 친왕의 冕服을 받아 자신의 왕위가 확보되었음을 바탕으로, 천명을 받은 왕으로서 가뭄[하늘의 꾸짖음]을 당하여 크게 자책하며 민생을 깊이 걱정함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다.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제 왕위가 온전히 정당화되었음을 드러낸다. 이 무렵 태종은 바야흐로 정치에 뜻을 두고 날이 밝기 전에 조회를 보아 여러 신하들이 더러 미처 오지 못하기도 하였다고 한다.[79]

---

73)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0월 갑자 "太室屋鳴如雷 或如折竹. 判漢城府事趙璞以聞, 上疑之 乃遣內侍一人聽之 果然, 凡七日而止. 上曰 但當操心愼行耳. 乃語代言等曰 (중략) 命議政府 凡民之弊 備察以聞."

74)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7월 계미 "命文武臣僚 各陳時政之弊. 釋京外二罪以下囚, 徙市, 聚巫女于司平府 瞽者于明通寺 僧徒于演福寺禱雨. 上曰 今玆旱甚 予謂必有言之者 待之有日矣, 無一人言及旱者. 予乃先發 然後群臣汲汲於祈禱 何其晩哉. 昨日通事元閔生來自西北面, 問其所歷 禾穀皆枯槁. 何不雨至此極也 予所痛心也. 往者告禾穀之盛者頗多 間有告以未盛者, 予固不以浮言爲憂樂 何曲直若是哉! 書曰 曰僭恒暘, 若予於事大 固無僭越之念, 國中豈有僭越之臣 不雨至此 天固難忱. 判承樞府事趙英茂對曰 是則中國餘烈 非我所憂. 上曰 非也 古人遇災 必責之於己 不歸之於人. 英茂默然. 上謂河崙曰 方今未便於民何事 無乃行楮貨之致然歟. 代言李膺曰 楮貨則百姓已便之矣. 崙曰 殿下恐懼修省. 上曰 更加修省 有何道歟. (중략) 上憂旱 自朔日日一御膳, 流涕 命罷供上田獵.(후략)"

75)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7월 갑신 "下禁酒令 闕內酒器 命皆藏之"

76) 위와 같음. "立考績黜陟之法"

7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7월 을유 "政府及百司上書 各陳時務"

78) 위와 같음. "親覽各司陳言. 召侍讀金科曰 今天之不雨 是予否德在位故也. 予欲辭位. 因涕泣 科亦涕泣."

한편으로 태종은 고명을 받은 뒤에 자신의 권위에 저촉하는 경우 그 언론을 문제 삼아 대간을 억압하였다. 1401년 7월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궁실을 다시 짓는 것을 비난하자, 태종은 나를 노숙하게 하려느냐며 간관을 하옥하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80] 태종은 간관의 상소에서 왕을 업신여기는 듯한 마음을 읽어내었던 것이다. 태종은 대간의 언론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1402년 정월 사간원 상소의 '讒訴를 들었다'는 표현에 크게 노하여 諫官을 하옥하였다가 외방에 안치하였다. 4월 간관 李之直 田可植의 상소에서 '鷹犬 聲色을 좋아한다' 표현을 보고 태종은 크게 분노하여 간관도 죄가 있으면 죽여도 된다고까지 말하였는데, 잘못을 말한 간관을 죄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국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문하여 파직하였다. 이렇게 태종이 간관을 억압한 뒤, 1402년 6월에 사간원에서 諫言을 넉넉히 받아들여주기를 상소하였는데 이후 태종은 대간을 의식하며 조금 그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3. 태조의 인정과 왕통의 정당화

왕통은 새 왕이 즉위를 종묘에 고함으로써 정당화된다. 태종의 경우는 부왕 태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통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태조의 인정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태조는 명의 고명을 받은 뒤에도 태종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다. 조사의의 난이 진압된 뒤에야, 태조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어 태종의 왕통이 정당화되었다고 하겠다. 먼저 정종이 嫡長의 근거이며 태종의 왕통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한 節妃 한씨를 神懿王后로 추존하여 仁昭殿에 모신 것과 정종을 잇는 세자가 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태조의 인정을 받기 위한 태종의 노력과 조사의의 난을 진압하여 태조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검토하겠다.

7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7월 임진 "召領司平府事河崙政丞金士衡李茂 議還新都可否. 上方有志於治 每視朝天未明 群臣或有未及者. 是日 御無逸殿視朝 還御經筵, 有不豫色然."

80) 崔承熙, 2004, 『朝鮮初期 言論史硏究』, 지식산업사. 324면. 이하 태종과 대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남지대, 2013, 앞의 논문을 참고.

1) 神懿王后 추존과 세자 되기

정종은 1398년 8월 말 이방원의 쿠데타로 적장이라 하여 세자가 되고 바로 태조의 선위를 받아 1398년 9월초에 즉위하였다. 정종은 즉위하자 바로 어머니 節妃의 齊陵에 즉위를 고하였고,[81] 11월에 神懿王后로 추존하여 仁昭殿에 모셨다.[82] 정종은 그 원년 한식에 제릉에 친히 제사지냈다.[83] 태종도 세자로 책봉된 뒤 바로 제릉을 뵈었다.[84] 태종은 즉위한 뒤에는 신의왕후의 진영을 개성으로 옮겨와 백관을 거느리고 제사하였다.[85] 이후에도 태종은 제릉에 배알하고 인소전에 親祭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것은 태조의 첫 부인으로 정종이 嫡長이 되는 근거이며 동시에 태종 왕통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께 효를 다함으로써 왕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겠다.

靖安公[뒤의 태종]은 1400년 1월말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뒤 2월 초하루에 세자가 되었다. 河崙 등이 청하자 정종은 도당에 명하여 세자로 삼고 내외의 여러 軍事를 都督하게 하였다.[86] 정종은 이어 종묘에 고하고,[87] 세자로 정식 책봉하여 군국의 중사를 맡겼다.[88] 세자 책봉의 명분은 개국과 定社에 공로가 크다는 것 곧 擇賢과 세자를 책봉하여 인심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아우를 세자로 삼은 예가 없으니 王太弟로 삼아야 한다는 대신의 건의에도, 정종은 굳이

81)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갑신 "遣奉寧侯福根 告卽位于齊陵" ○갑오 "設神懿王后忌齋 於藏義寺"

82)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11월 계미 "追尊皇妣節妃韓氏爲神懿王后. (중략) 奉安于別殿號曰仁昭." ○12월 정묘 "安神懿王后新畫于仁昭殿 親幸行祭"

83) 『정종실록』 권1, 정종 원년 2월 경신 "上以寒食 親祭齊陵, 當祭下淚."

84)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무신 "世子朝齊陵 行奠獻禮"

85)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5월 무신 "移安神懿王后眞于廣明寺. 自新都仁昭殿而至也" ○권 2, 8월 己巳 "上率百官 親祭于仁昭殿"

86)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병신

87)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정유 "遣三司左僕射李舒 告封世子于宗廟"

88)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기해 "册立弟靖安公[諱]爲王世子 句當軍國重事. 王若曰 建儲貳所以正國本, 崇位號所以定人心. 玆遵典章 庸擧册禮. 惟爾靖安公[諱]資全文武 德備英明. 當太上開國之初 克倡大義, 及寡兄定社之日 特立膚功. 矧謳謌之有歸 宜監撫之是任, 用命爾爲王世子. 於戲! 知人不易 爲子亦難. 以親以賢 旣處承祧之位, 惟忠惟孝 用裨爲政之方. 故玆敎示 想宜知悉."

"이 아우로 아들을 삼는다"[89]며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뒤에 태종이 바로 태조를 이었음을 내세운 데에서 미루어 보면 태조의 세자가 되는 길을 정종이 열어준 것으로 짐작된다. 정안공과 그를 세자로 추대하려는 이들은 태조의 세자이기를 원했던 것이겠다.[90] 靖安公이 세자가 되어 태조에게 사은하였는데, 기사에는 태조가 연회를 내리어 군주의 도리를 논하여 이르지 않은 데가 없었으며, "이미 세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고 있다.[91] 3월에 세자는 신도로 가서 종묘에 알현하였다.[92] 이렇게 세자 책봉이 마무리 되었다.

정종이 즉위하여 적장의 근거인 어머니를 신의왕후로 추존함으로써 태종은 왕통상 태조의 적자가 되었다. 2차 왕자의 난에서 승리하여 정종의 세자가 되었는데, 그 명분은 종사의 공과 덕을 내세운 택현이었다. 이렇게 태조 적자로서 택현의 명분으로 정종의 세자가 됨으로써 태종은 왕통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2) 태조와 관계 개선 노력

왕위는 왕이 죽으면서 다음 왕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왕통은 왕위를 물려받아 종묘에 고하면 저절로 정당화된다. 왕위를 물려준 왕이 살아 있는 선위의 경우는 대개 택현으로 정당화하였다. 이것은 (태종을) 세자로 책봉할 때나 정종이 선위할 때도 공과 덕에 근거한 택현임을 내세운 데에서 확인된다. 태조가 적장자 정종에게 전위하였고, 정종이 택현하여 (아우를 굳이 아들로 삼은) 세자에게 선위

89) 위와 같음. "時 大臣獻議者以爲 自古帝王立母弟 則皆封皇太弟 未有以爲世子者也, 請立爲王太弟. 上曰 今予則直以此弟爲子."

90) 이는 실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나중에 태조가 죽자 태종이 삼년상으로 효성을 드러낸 데서 방증될 뿐이다.

91)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2월 기해 "世子詣太上殿謝恩, 太上王賜宴 因論爲君之道 無所不至, 且曰 汝身所繫至重 宜自愼也. 今芳幹愚陋無知 妄興師旅 以至於此, 三韓多貴家大族 必皆笑矣. 予亦恥之. 然汝旣爲世子 宜布至公之道 治國保民可也. 老父所言 惟止此耳. 世子獻壽 極歡乃出."

92) 『정종실록』 권3, 정종 2년 3월 기사 "與王世子謁齊陵 遂畋于壺串" ○경진 "王世子如新都謁宗廟" ○갑신 "世子至自新都, 上及世子 御涼廳觀射 因設宴極懽."

하였기에 형식으로 보아서는 태종의 왕통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태조가 태종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꺼렸다는 데 있었다. 태종은 태조와 관계를 개선하여, 조선왕조의 시조이자 부왕인 태조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93] 태종실록의 곳곳에 태종이 효를 다하였음과 태조가 적극적으로 또는 은근하게 태종을 인정하였음을 드러내려 한 기사가 있다. 그러한 예를 보면 태종이 즉위하였을 때 태조가 기뻐하며 강명한 임금이니 권세가 아래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94] 태종이 왕으로서 처음 태조[태상왕]을 만났을 때의 기사가 있다. 그 때 태조가 태종에게 "네 형이 한양으로 돌아가 내 마음을 달래려 하여, 그 뜻이 이미 정해졌다. 네가 내 마음을 몸받을 수 있겠느냐?" 하니 태종이 "제가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95]

태종은 정종의 세자로 즉위하였으나, 조선의 시조이자 부왕인 태조에게 효성을 다하려 하였다. 그것은 태조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에서 강화된 것이겠으나, 근본적으로 유교왕정에서 선왕에 대한 효는 신료에게 모범을 보이며 충을 이끌어내는 윤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태종은 원년 초부터 11월말 태조가 소요산으로 가기 전까지 20회 정도 태조를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거나 헌수를 하였다.[96]

태종은 태상왕을 예우하고 그 말에 孝順하려 하였다. 1401년 3월에 태상전의 女官에게 월봉을 주었다.[97] 태조가 거친 바 여관에게 3~9품의 작을 주고 녹을 받게 하려 하였으나, 여관이 녹을 받는 것이 편찮아 월봉을 주었다는 것이다. 5월 말에 태조가 芳幹을 소환하라고 청하여,[98] 태종이 6월 초에 방간을 소환하려

93) 유교에서 孝는 忠에 앞서는 가치이다. 유교 왕정에서 왕은 효의 모범으로 신료의 충을 이끌어내도록 되어 있다. 비록 태조가 권력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始祖이자 父王인 태조의 인정 없이 태종의 왕위가 왕통에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94) 『태종실록』「總序」"太宗涕泣辭之不獲 遂卽位于壽昌宮. 太祖喜曰 剛明之君 權必不下移."

95)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11월 계유 "太上王至自臺山, 上率各司一員 幸長湍麻川以迎. (중략) 至是 謂上曰 汝兄欲還漢陽 以慰我心 其志已定, 汝能體予心乎? 上對曰 予何敢不從命乎. 太上王賜酒."

96) 『태종실록』에서 찾은 것은 1401년 1월 1회, 2월 2회, 3월 3회, 윤3월 1회, 4월 1회, 5월 2회, 6월 1회, 8월 3회, 9월 2회, 10월 3회, 11월 1회이다.

97)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3월 무진 "給太上殿女官月俸"

하였다가 의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그만두었다.[99] 태종이 의정부의 반대를 짐작하였을 것이지만, 태조의 청에 따르려 한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태조의 말에 따름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애썼다고 하겠다. 8월 초에는 태종이 헌수하는 자리에서 태조가 1398년 정변의 일을 거론하며 좋지 않았는데 태종이 흐느끼며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니, 태조가 기뻐하여 두 번이나 일어나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100] 9월말 생일을 앞둔 태조가 황해도 평주 온천으로 가자, 태종은 온천으로 찾아뵈어 헌수하고, 죄수들을 풀어주었다.[101] 태조가 서울에서 생일을 보내기가 마음이 편치 않아 멀지 않은 평주 온천에 다녀온 것이겠다. 이렇게 『태종실록』에서 태종이 태조를 정성스럽게 모신 것을 여기저기서 자잘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왕의 언행을 기록해야 하는 때문이지만, 태조가 바로 태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실록찬수자들이 태종의 효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는 서울을 떠나기 전 11월 중순에 태종을 불러 잠저 때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102] 태조가 태종을 부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아마 서울을 떠나려고 마음을 굳힌 태조가 마지막으로 태종을 불러 그간의 일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

98)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5월 병진 "上朝德壽宮獻壽. 太上王謂上曰 芳幹雖有罪 已懲矣. 召還若何? 上對曰 此臣之夙心 惟命是從."

99)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6월 신유 "命召還芳幹, 議政府率百官諫止之. 傳旨政府曰 懷安君庚辰之事 非其本心 但惑於朴苞耳. 今皇帝賜誥印 君臣之分已定, 何足嫌乎? 其遣人召還. 於是 (중략) 上皆不可曰 芳幹罪固不輕, 然太上之命 不可違. (후략)" ○임술 "判議政府事趙浚等上疏曰 (중략) 上重違太上之命 必欲召還." ○계해 "大司憲柳觀等 上章復請曰 (중략) 上猶豫未決 政府與百官交章上請 極陳不可, 上意乃決 遂令仍舊安置."

100)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8월 기미 "上朝太上殿獻壽. 太上王語及戊寅年事 有不豫色, 上涕泣柔聲以對. 太上王悅, 起舞至再." 그러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니었다. 태조는 그 달이 神德王后의 諱月이라며 獻壽를 물리쳤고(8월 신미), 태종은 금강산에 가려는 태조를 명 사신이 곧 온다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8월 정축).

101)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9월 계축 "太上王幸平州溫井, 上至金郊西川邊幄次 設宴奉餞." ○10월 을축 "上至溫泉, 見于太上王 進衣襨獻壽, 夜深乃罷." ○병인 "釋中外二罪以下囚, 以太上王誕晨也."

102)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1월 신축 "上卽詣太上殿. 太上遣中使召之也. 太上詳說潛邸時事及戊辰年回軍 化家爲國等事, 日暮 上還宮. 太上王將幸逍遙山 欲不使人知 因夜動駕, 上於是夕 又詣太上殿, 太上王不果行."

같다. 날이 저물어 환궁한 태종이 다시 저녁에 태상전으로 가서 밤을 틈타 가려는 것을 막은 데서 짐작된다. 또 며칠 뒤 태종이 경연에서 왕자의 난 때의 일을 참으로 하늘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라 하면서, 지금 안으로 부왕의 꾸짖음을 받고 밖으로 의논이 흉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밤낮 삼가고 두려울 뿐이라고 하였다.[103] 태조가 왕자의 난을 거론하며 태종을 꾸짖었음을 알 수 있다.

1401년 11월 말에 태조가 서울[개성]을 떠나 소요산으로 가버림으로써 태종의 관계 개선 노력은 실패하였다. 태조는 11월 26일 밤중에 서울을 떠나 소요산으로 갔다가,[104] 조사의의 난이 실패한 뒤에야 서울로 돌아왔다. 소요산으로 떠난 뒤에도 태종은 소요산으로 두 번, 檜巖寺로 한 번 태조를 찾아뵈었다. 이듬해(1402년) 정월 말에 태종은 소요산으로 태조를 찾아뵙고 헌수하였다.[105] 이때 종친과 성석린 등이 서울로 돌아가기를 힘써 청하였으나 태조는 듣지 않았다. 태조는 자기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두 아들과 한 사위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1398년 정변 때 죽은 방석 등을 거론하였다. 3월에도 태종이 북방의 일을 의논하러 소요산으로 태조를 찾아뵈었다.[106]

태종은 태조의 청을 들어주고 하려는 일을 도와주며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태조가 청하자 회암사에 300결을 되돌려주고 또 전지를 내렸고,[107] 회암사를 중수하려 하자 隊副 150명을 보냈으며,[108] 그 뜻에 따라 自超를 檜巖監主

103)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1월 갑진 "御經筵. (중략) 上與近臣言曰 火焰點于臂 則孰不欲疾去之哉. 其在戊寅年間父王病篤之時 群奸用事 忌我兄弟, 禍機之發 在於呼吸之頃. 其勢豈啻火焰點臂之急哉. 幸與二三同志出萬死計 出其不意而先發制之, 一夜之間 雲合響應 群奸伏誅 大事以定. 其初但求生活 豈敢有一毫希冀之心哉. 緣此而遂至今日 非予本心. 實賴天之所佑 豈人力之所及哉. 今內受父王之責 外得群議之洶洶, 罔知所爲 夙夜祗懼耳."

104) 『태종실록』 권2, 태종 원년 11월 경술 "中夜 太上王幸逍遙山. 上欲送于門外 不及." ○신해 "命申嚴把門之禁"

105)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정월 신해 "上朝太上王于逍遙山. 上從容獻壽, 太上與上酒酣唱和, 侍宴宗親及成石璘等 力請太上還駕. (후략)" ○임자 "上復獻壽于太上王. 太上王起舞上亦起舞, 聯句唱和極懽. (후략)."

106)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3월 임인 "上朝太上王于逍遙山. 將以議北方之事也." ○계묘 "上獻壽於太上王" ○을사 "上復獻壽于太上王"

107)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5월 갑진 "給檜巖寺田三百結" ○6월 무오 "賜田七十四結于檜巖寺. 太上王請之也."

로, 祖禪을 주지로 삼았다.[109] 1402년 8월 태종은 회암사로 태조를 찾아뵙고, 王師 自超의 말에 따라 고기를 먹지 않아 수척해진 태조의 뜻을 받들어 밀기에 들어 있지 않은 寺社라도 그 전토를 모두 환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태조가) 고기 반찬을 들도록 하였다.[110] 또 회암사에 전 120결을 주었다.[111] 10월에 명에서 사신이 나오자 知申事를 보내 태조에게 서울로 돌아오기를 청하였고,[112] 태조의 생일을 맞아 지신사를 회암사에 보내어 옷을 바쳤다.[113]

3) 趙思義의 난과 진압

태종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1402년 10월 말에 동북면으로 떠났다.[114] 태종은 중로에서 전송하려 하였으나 우정승 李茂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태종이 태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사람을 보내 살피니 길에서 서로 바라볼 정도라 하였다. 11월 1일에 태조가 동북면으로 향하였다고 기록하였고, 4일에는 금화현에 머물렀다.[115] 3일 환관을 보내 문안하였는데 5일에 돌아와 보고하기를 태조가 조종의 陵에 절하려 간다 하였다.[116]

---

108)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6월 신유 "太上王自逍遙山幸檜巖寺"

10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7월 갑오 "以王師自超爲檜巖監主 以祖禪爲住持, 從太上王之志也."

11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8월 계축 "上朝太上王于檜巖寺" ○을묘 "太上王復進肉膳, (중략) 太上王進朴錫命曰 寺社田地還給等事已下乎, 錫命對曰 已下矣. 太上王曰 欲見已下草文, 錫命卽進之, 太上王覽之, 授內竪藏之, 起揖謝之而入, 上喜甚 顧謂左右曰 樂哉今日之事!"

111)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8월 기미 "給檜巖寺田一百二十結, 從太上王之志也."

112)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0월 신해 "朔 上命知申事朴錫命 詣檜巖請太上王還"

113)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0월 경신 "上遣知申事朴錫命于檜巖 獻衣襨于太上王, 以十一日太上誕晨也."

114)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0월 정축 "太上王宴使臣溫全于澄波渡, (중략) 太上王欲率別侍衛 以幸東北面, (중략) 上聞太上王欲北幸, 欲出中路 迎慰溫全 仍詣太上行在奉餞, (중략) 遣知申事朴錫命 告于太上王曰 父王旣見二使臣 而迎送於道路 則上副使臣亦不可不見也, (중략) 太上王曰 使臣來則見之 不必往見也, 上不知太上王所向, 使人候之 相望於道."

115)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경진 "朔 太上王駕向東北面" ○계미 "太上王駕次金化縣"

116)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임오 "遣宦官金完于太上王行在所問安" ○갑신 "宦官金完來自太上王行在所, 完啓曰 太上殿下言 予自卽位以來 未得一拜祖宗之陵 嘗以爲念, (후

조사의의 난이 일어났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조사의의 난을 태조가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았다.[117] 11월 5일 안변부사 조사의 등이 거병하였는데, 顯妃康氏의 족속인 조사의가 강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라 기록하였다.[118] 8일 태조가 철령을 넘었다고 보고되었고,[119] 9일 태조가 역마를 타고 咸州로 향한다고 보고되어, 태종이 王師 無學을 태조에게 보냈다.[120] 이날 태종은 상호군 朴淳을 동북면에 보냈으나 죽임을 당하였고, 10일 대호군 金繼志를 동북면에 보내 교서를 반포하였다.[121] 11일에 호군 宋琉가 왕명으로 함주에 갔으나 역시 죽임을 당하였다.[122] 15일에 安平府院君 李舒를 태조 행재소에 보냈으나 길이 막혀 돌아왔다.[123]

11월 18일 태종이 병조에 나가 있었는데, 이날 태조는 서북면 古孟州로 향하였다.[124] 19, 20일에 李天祐가 趙思義 군과 싸워 패하자,[125] 21일 태종이 閔霽 등에게 서울을 지키도록 하고 서울[개성]을 출발하여 금교역 북쪽에 머물렀으며, 趙英茂 등은 군사를 거느리고 철령으로 갔다.[126] 태종은 22일 元中浦에 머물렀

략)"

117) 安俊姬, 1993, 「朝鮮初期 太宗의 執權過程과 趙思義의 亂」, 『外大史學』5, 190-96면. 조사의의 난의 경과와 태조와 관련은 이 논문을 참고.

118)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갑신 "安邊府使趙思義等擧兵 發人于州郡調兵. (중략) 思義卽顯妃康氏之族屬也 欲爲康氏報仇也."

11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정해 "賜淮陽府使金廷雋馬一匹. 廷雋來告太上王駕過鐵嶺也."

12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무자 "太上王御驛騎向咸州, 上遣王師無學於太上王行在所. 以無學太上王所敬信者 故欲其道達上意 而請速還駕也."

121) 주) 119와 같음. "遣上護軍朴淳于東北面 被殺于彼軍中. 淳至咸州 敎都巡問使朴蔓及州郡守令 勿從思義, 遂被殺于彼軍中." ○기축 "遣大護軍金繼志于東北面 頒敎書."

122)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경인"護軍宋琉受命至咸州 亦爲彼軍所殺"

123)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갑오 "上遣安平府院君李舒于太上王行在所, 命釋益倫雪悟從之. 舒與二釋皆太上王素所敬信者 故欲其見而悅之也." ○계묘 "李舒雪悟至鐵嶺 以路梗還"

124)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정유 "上出御兵曹 各司皆留二員" ○"太上王駕向西北面古孟州"

125)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무술 "李天祐遣游騎百餘于古孟州 爲思義兵所獲" ○기해 "李天祐與思義兵戰于古孟州艾田 敗績. 天祐見圍 與子密等十餘騎 力戰潰圍而出."

다.[127] 25일 도망쳐 온 知殷州事 宋典이 조사의의 군사가 흩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28] 26일 태종은 서울로 돌아왔다.[129]

11월 27일 밤 살수 가에 주둔하던 조사의의 군대가 무너져 흩어졌다.[130] 조사의의 군대가 흩어졌다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태조가 관련되어 그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실록에는 관군의 패배나 피해를 기록한 것은 보이나, 관군과 조사의의 군사이에 전투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태종으로서는 부왕 태조가 관련된 반군과 싸운 것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반군이 저절로 무너져 흩어진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명분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사의는 12월 7일 서울로 압송되어 巡衛府에 내려졌다가, 伏誅되었다.[131]

태종은 11월 27일 내관을 태조의 행재소에 보내어 문안하고,[132] 28일에 안평부원군 이서와 승 雪悟를 보내 宮醞을 가지고 태조 행재소에 가 문안하게 하였는데, 이날 태조의 거가가 서울로 돌아오는 것을 알려왔다.[133] 태조는 12월 초 평양부에 머물렀다가,[134] 8일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태종은 금교역에 나가 맞이하여 헌수하였다.[135]

---

126)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경자 "上發京城 次于金郊驛北郊, 命閔霽成石璘禹仁烈崔有慶等 留守京城, ○趙英茂金英烈辛克禮等指鐵嶺."

127)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신축 "駕次元中浦"

128)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갑진 "知殷州事宋典逃來, 典啓曰 天祐敗績 臣陷彼軍, (중략) 臣潛逃而來, 路見其軍 或四十或三十或二十作隊而逃者多矣."

129)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을사 "至自元中浦"

130)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병오 "思義軍至安州 夜潰"

131)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병진 "下趙思義及子洪于巡衛府" ○정묘 "趙思義康顯等伏誅"

132) 주) 130과 같음. "上遣內官盧希鳳于太上王行在所問安"

133)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1월 정미 "上遣安平府院君李舒釋雪悟 齎宮醞問安于太上王行在所" ○"賜延山府使禹博廐馬一匹, 博乘馹來告太上王回駕, 上喜而賜之." ○12월 경술 "朔 上遣內官獻衣襨于太上王行在所"

134)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신해 "太上王駕次于平壤府, 太上王曰 予在東北面時 國王不遣人, 在孟州時又不遣人 不無憾焉, 侍者曰 上使前政丞李舒大禪師益倫雪悟問安 乃以路梗未達而返, 太上王曰 皆予所信重者 故遣之也."

135) 『태종실록』 권4, 태종 2년 12월 정사 "上出金郊驛 迎太上王 入帳殿獻壽, 太上王還京." 태조가 돌아온 뒤 덕수궁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태종이 문안드린 것을 실록에서 정리하

조사의의 난이 진압되어 이렇게 돌아온 뒤, 태조와 태종의 관계는 명분에서도 그 우위가 뒤집혔을 것이다. 게다가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태종의 공신들은 왕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굳게 뭉쳤을 것이다. 이제 태조는 어쩔 수 없이 태종을 인정하고, 그 배려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403년 원단에 賀正 受朝한 뒤 群臣宴 자리에서, 태종은 지난번에 사직이 머리카락 들어갈 틈도 없이 위태하였는데 이제 태상왕[태조]이 탈 없이 돌아와 종사가 다시 안정되었다고 하였다.[136] 3월 초 태종은 대간의 반대에도, 그 뜻을 헤아려서 태조를 덕수궁으로 옮겨 살도록 하였다.[137]

조사의의 난은 태조의 인정을 받지 못한 태종 왕권에 대한 군사적 도전이었다. 태종이 이 난을 20여 일만에 진압함으로써, 한편으로 반대 세력을 숙청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되돌아온 태조가 태종의 왕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태조의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태종의 왕위는 왕통에서도 정당화되었다. 명의 고명을 받아 왕위를 정당화한 위에 태조의 인정을 받아 왕통을 정당화함으로써, 태종 즉위의 명분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하겠다. 이제 태종에게는 明帝에게 충성하고 부왕 태조에게 효도하며, 그 효와 충을 바탕으로 백성에게 仁政을 펴 나아가 택현의 명분을 賢君으로 입증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4. 다시 誥命을 받다

태종이 고명을 다시 받은 것은 명의 왕위다툼 탓이었다. 내전에서 승리한 成祖에게 등극을 경하하러 간 사신이 고명과 인신을 다시 청하였고, 이에 성조는

면, 1402년 12월 무오 을해 정축 무인; 1403년 1월 정해, 2월 갑인 丁丑 등 7회이다.

136)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1월 기묘 "朔 賀正受朝如儀, 宴群臣. 義安大君和與上洛府院君金士衡 右政丞李茂進壽酒 上下床受杯. 宴酣, (중략) 上曰 今日 予與卿等及群臣開宴同懽 非荒淫之樂也. 昨者社稷安危 間不容髮, 今太上王無恙而還 宗社再安, 今日之懽 豈偶然哉. 李茂對曰 殿下之有今日 天也. (중략) 殿下之有今日 皆殿下之盛德也. 上涕泣, 茂亦涕泣."

137)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3월 을유 "太上王移御德壽宮"

정통을 강조하며 고명을 다시 내렸다.

1403년 3월 중순 태종은 賀登極使 河崙 등과 함께 명 사신이 고명과 인장을 가지고 나온다는 보고를 받았다.[138] 4월 2일 하등극사 서장관이 명제가 내린 고명과 인장을 가지고 오는 사신이 이미 의주에 이르렀음과, 하륜 등이 고명 인장을 예부에 청하여 받게 된 경위를 보고하였다.[139]

4월 8일 명의 사신이 도착하여 고명과 인장과 大統曆을 받았다.[140] 명제는 "너희 조선국이 동번에 있어 먼저 성교를 입어, 職貢의 예가 허물이 적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여러 번 은총의 물품을 내리었다. 짐이 통어하던 처음에 너[諱]가 깊이 皇考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비의 교훈을 이어받아 곧 表奏를 진달하여 직공을 다해 궁궐마당에 왔다. 이 충성을 생각하매 참으로 가상하다. 이에 너를 명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고 인장을 주어, 길이 茅土로 갚는다." 하였다. 앞서 받았던 고명과 인장은 반납하였다.[141] 태종은 백관의 진하를 받았다.[142] 이날 원자가 성균관에 입학하였다.[143] 이때도 고명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 고명을 선포한 날 병부에서 易換馬 1만필에서 채우지 못한 2,193필을 요구하여, 進獻官馬色을 다시 두었다.[144] 태종이 바로 조처하여,[145] 6월 역환마 2,548필을 명으로 보냈다.[146]

---

138)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3월 갑오 "還宮. 上聞賀登極使河崙 副使李詹 賀正使趙璞等 與朝廷使臣六人 齎誥命印章而來也."

139)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4월 무신 "賀登極使書狀官趙末生還, 啓曰 帝命左通政趙居任齎誥命 都指揮高得齎印章來, 已至義州矣. 初 河崙李詹趙璞等至京師 (중략) 崙等請誥命印章于禮部侍郎趙禮, 禮曰呈報可矣. 乃卽呈報, 禮部奏聞, 命錫之."

140)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4월 갑인 "都指揮高得(중략)等 齎誥命印章勅書至, 設山棚結彩備儀禮, 上具冕服 率群臣迎于西郊, 至闕行禮, 受誥命印章." ○"奉天承運皇帝制曰 朕惟王者受命 混六合爲一家, 天道同仁 視萬方爲一體, 所以地無遐邇 人咸景從. 我皇考太祖高皇帝 誕膺天命 肇造寰區, 薄海內外 悉皆臣順. 爾朝鮮國 居東藩 聿先聲教, 職貢之禮 少有愆違, 故在朝廷屢降寵錫. 肆朕統御之始 爾諱深念皇考之恩 遵承乃父之訓 卽陳表奏 效職來庭, 眷此忠誠 良足嘉尙. 玆用命爾爲朝鮮國王 錫以印章 永胙茅土, 於戲 保國安民 恪守畏天之道, 作藩樹屛 式謀貽後之規. 厥位寔艱 朕言惟允, 毋怠毋荒 爾其欽哉."

141) 위와 같음. "禮部爲給賜事"

142) 위와 같음. "服冠袍受賀. 以政府率百官上箋, 賀受誥命印章也."

143) 위와 같음. "元子入學, 服學生服 謁文廟奠爵, 行束脩禮于博士."

144) 위와 같음. "兵部爲易換馬匹事" ○"復設進獻官馬色"

고명을 다시 받은 것을 계기로, 태종은 고명을 처음 받은 때와 비슷하게 국정에 의욕을 보였으며, 관제를 고쳤다. 1403년 4월 이조에 명하여 時散 각품의 世系와 歷仕를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두도록 하였다.[147] 6월에 예조에서 각사가 일을 아뢰는 의식을 상정하였고,[148] 왕지를 내려 6품 이상으로 아는 사람을 천거하도록 명하였으며,[149] 죄수를 옥에 지체해두지 말 것과 가뭄이 심한 경상·전라도의 감사에게 비가 오지 않은 날수와 풍흉의 형세를 보고하도록 명하였다.[150] 태종은 고명을 처음 받은 때처럼 6월말에 용관을 줄이고 관제를 고쳤으며, 都目政에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하였다.[151] 6월 29일 관제를 고친 내용은 1405년 1월의 육조 중심의 관제개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아울러 왕실재정의 사적 성격을 줄이고 국가재정으로서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152] 또 도목정에 議政府贊成事이하 在內의 諸君, 三軍摠制, 경중의 각사, 외방의 수령을 모두 다시 임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태종이 왕위와 왕통에서 권위를 갖춘 왕으로서 새출발을 확인하는 조처로 볼 수 있다.

태종은 조사의의 난을 진압하여 어쩔 수 없는 태조로 하여금 자신의 왕통을 인정하게 만든 뒤에, 새로 즉위한 명 성조의 고명을 다시 받은 것을 계기로 왕실을 비롯하여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함으로써 왕으로서 권위를 명실상부하게 확인하였다.

---

145)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4월 경오 "與趙英茂議朝廷易換馬事. 使朴錫命傳旨政府曰 帝恩甚重, 易換馬事 雖未能卽辦, 七八月間 盡數入送."

146)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기유 "兵曹典書偰眉壽 押易換馬如京師 二千五百四十八匹也"

147) 주) 145와 같음. "命吏曹 將時散各品世系歷仕置簿"

148)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을묘 "定各司啓事儀"

149)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기미 "命六品以上各擧所知"

150)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을축 "命勿滯獄囚"

151)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을해 "汰冗官改官制. 議政府贊成事以下 在內諸君 三軍摠制 京中各司 外方守令 皆改下."

152) 南智大, 1993, 「朝鮮初期 中央政治制度硏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14면.

5. 맺음말

태종이 왕위와 왕통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맺음말로 삼는다.

정종은 즉위한 뒤 嫡長의 바탕인 어머니를 神懿王后로 추존하여 仁昭殿에 모셨다. 정종이 태종을 세자로 책봉한 명분은 擇賢이었다. 정종은 선위하면서 다시 택현을 강조하였다. 태종은 즉위하며 적장 정종의 세자로서 선위받음을 내세우고, 敬과 仁으로써 畏天勤民하여 惠政을 베풀 것을 선포하였다. 태종은 제후의 명분을 지키며 好學과 納諫을 드러내려 하였다. 壽昌宮 火災를 당하여, 태종은 불교행사를 없애고 8사로 자책하며 求言敎書를 내렸다. 태종은 齊陵과 인소전에 친히 제사를 모시어 효를 다하며, 태조의 적통임을 드러내었다.

명에서는 태종의 嗣位를 그냥 받아들였다. 이를 종묘에 고함으로써 태종은 왕위와 왕통의 정당화를 이루었다. 그 뒤 태종은 정치에 더 적극적이었다. 明帝의 誥命도 바로 내려졌다. 1401년 6월 태종은 조선왕조에 들어 처음으로 고명을 받아 왕위를 온전하게 하였다. 태종은 국가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문하부를 없애고 의정부 중심으로 관제를 개정하는 계기로 삼았다. 1402년 2월 태종은 親王의 冕服을 받고, 4월에 원자를 책봉함으로써 왕위를 더욱 안정시켰다. 태종은 天命의 군주답게 災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성껏 대처하였다. 1402년 7월초 가뭄으로 문무신료에게 시정의 폐를 말하도록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취하고 나서, 태종은 한 사람도 가뭄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고 신료들을 꾸짖으며 가슴깊이 걱정하였다. 자신이 부덕한 탓이라며,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다며 흐느꼈다. 태종이 고명과 친왕 면복을 받아 왕위가 정당화·안정되었음을 의식하고, 가뭄을 당하여 受命君主답게 자책하며 민생 걱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태종의 왕통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태조의 嫡長, 정종이 擇賢하여 선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조이자 부왕인 태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태조의 인정이 필요하였다. 실록 여러 곳에 태조가 인정하였음을 드러내는 기사가 보이나, 태조는 인정하기를 꺼렸다. 태종은 태조를 태상왕으로 예우하고 그 뜻에 孝順하려 애썼다. 태조가 개성을 떠남으로써 그러한 노력은 실패하였고, 1년 뒤 1402년 11월에 趙思義의 난이 일어났다. 난이 진압된 뒤에 서울로 되돌아온, 태

조는 어쩔 수 없이 태종을 인정하게 되었다. 태조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태종의 왕위는 왕통에서도 온전히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내전에서 승리하여 황제가 된 成祖의 고명을 1403년 4월에 다시 받았다. 태종은 처음 고명을 받았을 때처럼 관제를 개정하여 6조 중심의 체제를 준비하였다. 또 왕실과 모든 관원을 다시 임명하여 왕위와 왕통에서 권위를 갖춘 왕으로서 새 출발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태종은 왕위와 왕통을 정당화하여 그 명분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태종은 明帝에 대한 충성과 父王 태조에 대한 효도를 바탕으로 백성에게 惠政[仁政]을 펴 나아갈 권위를 형성하였다. 태종에게는 이제 백성에게 은혜로운 정치를 하여 현군이 됨으로써, 세자책봉과 선위 때 내세웠던 擇賢의 명분을 입증하는 과제가 남게 되었다.

왕위 왕통의 정당화가 거슬러 올라가 즉위의 도덕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대관계에서 명제의 고명을 받았고 결국 부왕의 인정을 받은 뒤에까지, 태종의 왕위와 왕통에 명분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태종이 명분을 의식하며 왕으로서 명분을 갖추어내려 노력한 것은, 조선왕조의 정치가 성리학의 가치를 지향하며 왕이 모범을 보이려는 정치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왕은 가치와 여론의 제약을 받으며 맡은 일을 해야 하는 왕이 되었다. 왕권이 가치[仁政]와 公論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주어지던 왕의 도덕성과 명분도 이제는 백성에 惠政를 펴서 유지하고 구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갔다.

주제어 : 명분, 擇賢, 誥命, 王統의 정당화, 太祖의 인정, 畏天勤民, 惠政, 孝忠仁.

투고일(2013. 8. 6), 심사시작일(2013. 8. 8), 심사완료일(2013. 8. 26)

<Abstract>

Joseon Taejong's Justification of His Kingship and Legitimacy of Royal Line

Nam, Ji-Dae *

Taejong's inauguration had no technical issue because he had been installed as Crown Prince and ascended the throne in accordance with the "choosing the wise" rule by King Jeongjong, who succeeded to King Taejo by primogeniture. But Taejong was conscious of the moral issues related with his inauguration because he had made Jeongjong King of Joseon by his coup d'état and forced him to abdicate against his will. And Taejong's enthronement was not approved by his father King, Taejo. So he tried to justify his ascension to the throne in several ways.

The first action was to emphasize his installation as Crown Prince by the "choosing the wise" rule and the legitimacy of his Royal line by stressing his enthronement as a result of Jeongjong's abdication. He declared that he will rule his people with Respect (敬) and Perfect Virtue(仁). He also tried to show his love of learning and acceptance of remonstrance, maintaining his royal causes.

Taejong also justified his kingship by reporting the official approval of his enthronement by the Ming government to Jongmyo(宗廟; the Royal Ancestral Shrine). The official written notification of approval by the emperor of Ming Dynasty was received in June 1401, which consolidated Taejong's kingship and legitimacy of his Royal lineage. After this, he restructured the governmental system. Receiving the court robe (given to the Imperial Kings) from the Ming government, he installed his eldest son as Crown Prince to consolidate his kingship. Like a heaven-willed king, he promptly responded to and coped with natural disasters. In July, 1402, he even sobbed about the severe drought, attributing it to his weakness in moral virtues and mentioning his spontaneous abdication.

* Professor, Dept. of History Education, Seowon University.

Next, he needed his father king Taejo's approval because Taejo was alive then. The latter refused to admit Taejong as legitimate king of Joseon. With repeated efforts such as treating him as an abdicated King and respecting his will, Taejong finally succeeded in getting his constrained approval after the suppression of "Jo Saeui's Revolt" in November, 1402.

With the second official letter of approval from the Emperor of Ming Dynasty in April 1403, Taejong restructured the governmental systems as he had done after receiving the first official letter. This means his new start as a legitimate and authoritative king with rightful kingship and Royal lineage.

Finally succeeding his moral issues concerned with his enthronement, Tajong formed a kind of authority to rule as a benevolent king based on his loyalty to the Emperor of Ming Dynasty, fulfilling his filial duty to Taejo, his father King. The next task for Taejong is to prove his cause for "choosing the wise".

Key Words : moral cause, "choosing the wise"[擇賢], "the official letter of approval" [誥命], justification of Royal lineage, approval of Taejo(太祖), "admiring the heaven and serving the people diligently"[畏天勤民], the benevolent rule[惠政].